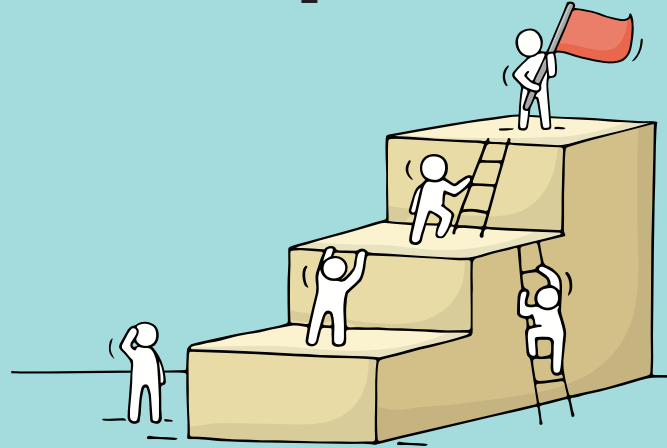




비위면직자들의 취업제한 제도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



취업제한 제도 개요



목적

비위면직자들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



제재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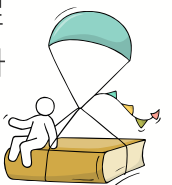
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를 실시
※ 위반자 벌칙조항(법 제89조)
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취업제한

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,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, 법무·회계·세무법인 등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

적용대상

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, 파면·해임된 공직자,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



※ 공직자: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



비위면직자들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

구분	기존	개정사항
적용대상	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·해임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	(기존)적용대상자 (확대)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었던 자
취업제한 기관	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관 - (신설) 부패행위 관련 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·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- (확대)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<u>영리사기업체 등</u> 및 협회 <p>* <u>법무·회계·세무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 등</u></p>
업무관련성 판단범위	소속(관할) 부서의 업무	- (확대) 2급 이상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
자료 요구권	(신 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위면직자들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근거 마련 · 범죄경력자료, 비위면직자들의 인적사항 및 징계 사항, 공무원·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, 기타소득세 자료
위반시 제재	(신 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· 해임요구 거부(1천만원) · 자료요구 거부(2백만원 ~ 5백만원)



※ 시행일('16. 9. 30.) 이전에 발생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름